

소 장

원 고 1. 000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2. 김(1)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3. 김②○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김◇◇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1. 피고 김♦♦♦는,
 - 가. 원고 ○○○에게 금 33,333,333원, 원고 김①○, 원고 김②○에게 각 금 22,222,222원 및 각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 달 다음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 나.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에게 6,904,762/230,000 지분에 관하여, 원고 김①○에게 각 4,603,174/200,000,000 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3. 위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파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1. 신분관계와 상속개시
 - 소외 망 김◉◉는 19○○. ○○. ○○. 원고 ○○○과 혼인하여 자녀로 피고 김 ◇◇, 원고 김①○, 원고 김②○를 두었으며, 20○○. ○. ○. 사망하였습니다.
- 2. 구상금채권의 발생 및 취득
 - 가. 소외 망 김◉◉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으로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 있었는데, 소외 망 김◉◉는 19○○. ○○. ○○.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피고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소외 망 김◉◉의 사망 뒤인 20○○. ○. ○○. ○○지방법원 ○○지원의 경매개 시결정(20○○타경○○○○호)에 따라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제1차 매각기일인 20○○. ○○. 최저매각가격인 금 100,000,000원에 매각되어 그 대금은 20○○. ○○. ○○. 완납되었으며, 이는 모두 타인에게 배당되었습니다.
 - 나. 원고들은 상속을 원인으로 소외 망 김◉◉의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지위를 포괄승계 하였으므로, 위 매각대금완납으로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20○○. ○○. ○○. 위 근저당채무자였던 피고 김◇◇에 대하여 상속지분에 따른 구상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입니다. 한편,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담보권실행에 따른 매각으로 상실하게 된 경우, 물상보증인인 소유자가 채무자한테 구상 받을 채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매각허가결정 확정 당시의 부동산 시가 상당액이고, 그 부동산 시가 상당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각대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다 639 판결 참조).
 - 다. 따라서 원고들은 각자의 상속분(원고 ㅇㅇㅇ는 3/9, 원고 김①ㅇ, 원고 김②○는 각 2/9)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구상권 채권을 가집니다.

원고 ㅇㅇㅇ: 100,000,000원×3/9=33,333,333원(원 미만은 버림, 다음부터 같**婆**

원고 김①○:100,000,000원×2/9=22,222,222원

원고 김②○: 100,000,000원×2/9=22,222,222원

3. 유류분반환청구

가. 원고들의 유류분침해

(1)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소외 망 김◉◉는 19○○. ○. ○. 피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하여 같은 달 4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소외 망 김◉◉의 사망 당시인 20○○. ○. ○. 그 시가는 금 230,000,000원이었습니다. 또한,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으로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 있었고, 20○○. ○. 당시 그 시가는 금 120,000,000원이었습니다. 한편,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증여로 피상속인한테서 받은 특별수익은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민법 제1008조의 해석상 그 증여가 상속개시 전 1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줄 것을 알고 이루어진 것이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으로 삼아 특별수익자의 유류분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반환청구가 인정된다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1995. 6. 30. 선고 93다1715 판결),이 사건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피고가 생전에 증여 받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의 가액 금 230,000,000원과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인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의시가 금 120,000,000원의 합계 금 350,000,000원이 됩니다.

(2) 원고들 유류분의 가액산정

원고들의 유류분은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에 원고들의 유류 분 비율을 곱한 것으로 이는 각자 상속분의 1/2에 해당하고, 각자의 유류 분을 돈으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ㅇㅇㅇ : 58,333,333원(=350,000,000원×3/9×1/2)

원고 김①○ : 38,888,888원(=350,000,000원×2/9×1/2)

원고 김②○: 38,888,888원(=350,000,000원×2/9×1/2)

(3) 원고들의 실제 상속재산

유류분의 부족분을 구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공동상속인들의 실제 상속 재산을 계산할 때에 공동상속인 가운데 생전증여에 따른 초과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수익자는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보아 그 상속분은 고려하지 않고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만으로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특별수익을 얻었음이 계산상

명백한 피고의 상속분은 유류분의 부족분을 구하기 위한 공동상속인 보실 실제 상속재산의 계산에는 고려하지 않을 것이므로, 원고들의 실제 자산의 계산을 위한 상속분의 분모는 '7'이 되고, 이에 따라 원고들의 실제 상속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ㅇㅇㅇ : 120,000,000×3/7=51,428,571원

원고 김①○ : 120,000,000×2/7=34,285,714원

원고 김②○ : 120,000,000×2/7=34,285,714원

(4) 유류분침해={(2)-(3)}

위 각 유류분가액에서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을 뺀 것이 유류분 부족분이므로, 소외 망 김◉◉의 피고에 대한 위 각 증여행위로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유류분이 침해되었습니다.

원고 ㅇㅇㅇ: 6,904,762원(=58,333,333원-51,428,571원)

원고 김①○ : 4,603,174원(=38,888,888원-34,285,714원)

원고 김②○ : 4,603,174원(=38,888,888원-34,285,714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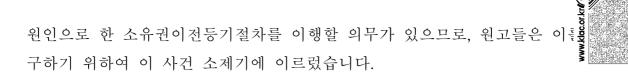
나.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

원고들이 구하는 유류분침해를 원인으로 한 유류분반환청구는 형성권으로 서 물권적 효과를 가지므로 그 반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입되는 재산의 증여는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당연히 실효되고 증여 받은 자의 권리는 그 한도에서 유류분권리자에게 귀속되므로,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증여 받은 재산에 관하여 유류분침해부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위각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원고 ○○○에 대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한 6,904,762 /230,000,000(유류분침해액/피고의 수증액)
- (2)원고 김①○, 원고 김②○에 대하여, 각 별지 제2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 한 4,603,174/200,000,000(유류분침해액/피고의 수증액)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에게 금 33,333,333원, 원고 김①○, 원고 김②○에게 각 금 22,222,222원과 각 이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완납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까지는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에게 6,904,762/230,000,000지분에 관하여, 원고 김①○, 원고 김②○에게 각 4,603,174/200,000,000지분에 관하여, 각 유류분반환을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기본증명서

(단, 2007.12.31. 이전에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

1. 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1. 갑 제3호증의 1, 2 각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4호증의 1, 2 각 토지대장등본

1. 갑 제5호증의 1. 2 각 건축물대장등본

1. 갑 제6호증의 1. 2 각 부동산시가감정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00. 0. 0.

위 원고 ㅇㅇㅇ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구 ○○동 ○○ ○○○아파트

[도로명주소] 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ㅇㅇ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아파트

1층 000.00 m²

2층 000.00m²

3층 000.00m²

4층 000.00 m²

5층 000.00 m²

지층 000.00 m²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번호 206호

면 적 00.00 m²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시 ○○구 ○○동 ○○ 대 ○○○㎡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ㅇㅇㅇ의 ㅇㅇ.ㅇㅇ 끝.



부동산의 표시

- 1. 서울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ㅇ 대 ㅇㅇㅇ.ㅇ㎡.
- 2. 서울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ㅇ 대 ㅇㅇㅇ.ㅇ㎡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및 시멘트블록조 시멘트기와지붕 4층 주택 및 점포
 - 1층 000.00 m²
 - 2층 〇〇〇m²
 - 3층 000.00 m²
 - 4층 0.00m² 내
 - 1층 181.82 m²
 - 2층 181.82㎡. 끝.

			(10년 출구조공단 ·	
관 할 법 원	※ 아래(1)참조	<u>소</u> 멸시효	○○년(□ 소멸시효일람표 www www www www www www www www www w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용	· 인지액 : ○○○원(☞산정 · 송달료 : ○○○원(☞적용	-대상사건		
불복절차				
및 기 간	· 경락으로 인하여 담보부동산의 구상 받을 채권의 범위는 특별	l 소유권을 별한 사정이	상실한 물상보증인이 채무자로 부터 없는 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	
기 타	하게 된 경략허가결정확정 당시의 부동산의 시가상당액임(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다639 판결). · 경매목적물의 소유자가 경매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의 범위는 소유권을 상실할당시의 그 목적물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이며, 비록 그 경매절차에서 경매신고인이 없어 2차에 걸쳐 최저경매가격이 저감된 후에야 경략되었다고 하더라도 제1차 경매기일에서의 평가액(최저경매가격)이 그 객관적인 교환가치임(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42621 판결). · 민법 제1008조의 취지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중여 또는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위하여 그 수중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있음.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따라서 그 중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됨.원심이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부동산의 가액산정 시기를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으로 관시한 것은 정당함.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민법이 정한 유류분제도의 목적과 민법제1115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다른 공동상속인들 중 각자 중여 받은 재산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만을 상대로 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하고,공동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는 유류분이라는 것이 없으므로 공동상속인은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 그 금액의 비율에 따			
	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병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	경우 그 의사 반환청구의 의 선등기청구권이 으로 특정하여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 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며, 그 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 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민법 제1117조 로 중단됨(대법원 2002. 4. 26. 선고	

※ (1) 관 할

-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라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 2.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 3. 등기·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 4.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 또는 등기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소멸시효

유류분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음(민법 제1117조).

※ (3)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